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Nation-Wide Library Cooperative System Model

이 상 복(Sang-Bok Lee)**

이 용 훈(Yong-Hun Lee)***

곽 승 진(Seung-Jin Kwak)****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이론 분석과 국내·외 도서관 협력체계 현황 및 의견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중심 협력체계를 근거한 전국적 협력체계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도서관법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research model to nation-wide Library Cooperative System in Korea and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and investigate theories, types and model of Library Cooperation; an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operations of major Cooperative System in all library types. The results developed new model of national wide Cooperative System on the basis of region Cooperative System.

키워드: 도서관 협력시스템, 전국적 도서관 협력모델

Library Cooperative System, Nation-Wide Library Cooperative System Model

* 본 연구는 문화관광부(도서관 정보정책 기획단)의 국고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blee@daejin.ac.kr)

*** 한국도서관협회 사업진흥부장(blackmt@kla.kr)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jkwak@cnu.ac.kr)

논문접수일자 : 2008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08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08년 6월 8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7년 4월 5일 시행된 새 「도서관법」은 기존 도서관 환경에 도서관 협력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추진되었던 중앙집중적 또는 관종별로 추진되어 오던 도서관 정책이 새 「도서관법」에서는 지역(시·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서, 앞으로는 시·도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도서관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 어느 유형의 도서관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도서관들의 자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은 물론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가진 자원과 서비스를 하나의 협력체계로 연결해서 국민들이 모든 도서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도서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 협력체계를 통한 자원과 서비스 공유는 우선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협력체계(협력네트워크)와 이를 아우르는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원활한 유통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전국적 차원의 새로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도서관 협력체계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의 협력체계(또는 협의체)와 일부 지역별 협력체계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해당 협력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 끼리만의 협력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법과 환경에 적합한 전국적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도서관 협력체계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과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서관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그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지역과 관종을 함께 아우르는 도서관 협력체계 운영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기존의 관종별 도서관 협력체계를 지역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로 발전시키고, 지역 중심 협력체계를 연결하여 전국적 협력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과제를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전략과 개선해야 할 법·제도적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및 각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서관 정책 수립과 추진, 정책조율 등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이론 분석

「도서관법」 등 법률적 의미는 물론 각종 연구자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여 도서관 협력체계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고, 도서관 협력의 목적, 목표, 내용 등을 규명하였다.

2) 국내·외 도서관 협력체계 현황 분석

현재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중인 도서관 협력체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국내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협력망
- ②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 ③ 공공도서관 분야: 공공도서관협의회 및 각 지역지부, 각 지역 사서연구회, 한국어린이 도서관협회 등
- ④ 대학도서관 분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정보망,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강원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광주·전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대구경북 대학도서관연합회, 부경지역 대학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서울동북부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5개 대학 학술정보교류협의회, 전북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

(KORSA),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등

- ⑤ 학교도서관 분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도서관 협력망(DLS),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경기지역학교도서관협의회 등
- ⑥ 전문도서관 분야: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한국교회도서관협의회,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 국가연구정보협의회,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등
- ⑦ 기타: NDSL, KESLI 등

3)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의견조사·분석
새로운 지역 중심 및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모델 개발에 반영하였다.

- ① 관중별 전문가간담회: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분야 전문가 간담회
- ② 지역별 연찬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지역 현장 실무자 연찬회
- ③ 워크숍: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1회)
- ④ 자문회의: 전국적 협력체계 구축 모델에 관한 최종시안에 대한 원로전문가의 자문
- ⑤ 공청회: 새로운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모델(안)에 대한 공청회(1회)

4) 도서관 협력체계 모델 개발

이론과 사례 조사·분석, 도서관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최상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모델을 개발·제시하였다.

5)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과 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분석
 연구결과로 제시한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과 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개선 또는 발전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도서관 협력체계 현황분석

2.1 도서관 협력체계의 출현 배경 및 진행경과

우리나라에서의 도서관간 협력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이른바 정보선진국들이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흐름에 따라 도서관간 정보처리기술, 물적·인적 자원의 격차 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상호대차 등과 같은 도서관간 협력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간 자원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활동의 효시는 1967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시 소재 일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¹⁾이 참여한 '도서관자료 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당시 참여 도서관별 장서구성의 격차와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 되지는 못하였으나 그 후 도서관 각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최정소 2007).

1970년대에는 주로 행정적 협약에 머물렀으나, 1987년 「도서관법」에서 도서관협력망을 법률로 규정한 이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도서관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히 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이 확대·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추진은 도서관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된 1990년대 이후로서, 1996년 8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은 '도서관협력망 구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협력망 운영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각 시·도로 통보되고 15개 시·도의 운영계획 시안을 접수하여 12월 당시 운영 중이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도서관협력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다음해(1997년) 2월 시·도로 통보되었으며, 4월 구체적인 협력망 운영계획을 접수하였다. 1998년 7월부터는 도서관 분담수서가 실시되었으며, 1999년 9월부터는 297개 도서관이 참여하는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사업이 시작되었다.

도서관협력망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별 도서관별 분담수서와 관외대출 및 복사서비스 등 상호대차, 도서관 자료의 분류, 편목업무에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활용, 관외대출증 공유, 복사카드공유,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운영, 문화프로그램 협력, 공동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2005년부터는 공공도서관 협력망 운영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도서관협력망 홈페이지²⁾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와 상호대차 시스템 개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공유 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협력과에서 '도서관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조정 및 지도, 국내외 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도서관 및 도서관

1) 여기서의 특수도서관은 현재의 전문도서관임.

2) <<http://nl.go.kr/together/index.php>>.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 업무를, 작은도서관 진흥팀³⁾이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화 구축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작은도서관 상호정보교류 활성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이 '국가문헌정보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전국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1999년 기존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 첨단학술정보센터(KRIC, 1996년 설립)와 한국교육방송원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 1997년 설립)를 통합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협력활동이 강화되었다.

대학도서관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학술정보 연계 이용체제 구축(해외 DB 국가 라이선스 도입 추진 및 컨소시엄 구성, 해외박사학위논문 원문콘텐츠 도입, 구축 및 서비스, 해외 대학 강의록, 이러닝 콘텐츠 확충, 해외유관기관 대외협력, 해외학술정보 수요 및 이용 현황 조사·분석), 국내학술정보 공동 이용체제 구축(학술정보 서비스의 국제화 강화, dCollection 보급 확대, 국내외 상호대차 확대(개인 이용자, 해외 e-DDS)를 통한 활성화, 지식정보 공유 활성화 기초 연구, 대학도서관 협력체 운영), 고등교육 정보화 활성화 지원, RISS 개발 및

유지보수(RISS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학술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검색 시스템 고도화, dCollection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학술정보 수집 대상 전체 기관, 신기술 및 표준화 기반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도서관 발전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⁴⁾

학교도서관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도서관 정보화 기반체제(DLS)⁵⁾ 구축 및 중앙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과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한 활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표준모델 연구, 도서관 활성화 2단계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학교도서관 현황조사·분석 및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자료개발 연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평가 연구, DLS 이용현황 및 만족도 분석, DLS 시스템 확장을 위한 연계방안 연구 등)은 물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도 담당자 연수 및 도서관 활용수업 활성화 연수, 각종 자료의 제작과 보급, 학교도서관 대회 개최, DLS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⁶⁾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부 도서관들의 자발적 협력체를 통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도서관의 성격상 다양한 전문분야가 산재해 있어 이들 분야별로 협력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의학과 신학 그리고 불교학 분야와

3) 작은도서관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2006년 4월 6일 새로 설치된 조직으로, 설치 이후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은 물론 작은도서관 관계자 연찬회, 각종 연구 및 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인용 2007. 9. 20]. <<http://www.keris.or.kr/intro/station3.jsp?div=5&layerNo=5>>.

5)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되는 표준화된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으로서, 교육청 관내의 개별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업무(수서·목록구축·대출/반납 등)를 자동화하고, 인터넷 기반의 독서지원 기능(정보검색, 독서정보제공, 독서표현 활동, 독서지도 및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제임.

6) DLS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학술정보원(2006). 『2006년 학교도서관정보화기반체제(DLS) 운영·지원』(사업보고 PR 2006-5)을 참조.

과학기술 분야 등 일부에서 해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간 협력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⁷⁾

- 제1기(1964년부터 1993년)

1967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10개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지역별 또는 분야별 협력망이 구성,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구성된 협의체로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1963), 전국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1965),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1968),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1972),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1973),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1972), 한국전문도서관협회(1979), 대전·충남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1991) 등 8개 협의체를 들 수 있다.

- 제2기(1994년부터 1997년)

1994년부터 1997년은 각 도서관이 상호협력 분야 중에서 상호대차와 원문복사서비스를 강화한 시기로서, 정보통신의 발달 및 인터넷 보급의 확대, 도서관전산화를 통한 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도서관들은 도서관자료를 우편이나 팩시밀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상호협력활동을 도모한 시기였다. 1997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협력망의 중앙관으로서 16개 시·도 지역대표관을 거점으로 단위공공도서관을 연계하는 공공도서관협력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

서관정보화사업, 종합목록 등의 협력사업을 지역별로 시행하였다.

- 제3기(1998년부터 현재까지)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도서관간 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과 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된 시기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동수서, 공동목록, 상호대차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에 준거한 새로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 도서관 협력체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

2.2.1 도서관 협력체계의 문제점

도서관 협력체계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협력체계에 관한 기존 연구 표 1과 도서관 협력에 참여한 각종 협의체의 설문조사, 간담회, 공청회, 자문회의 결과 표 2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2 도서관 협력체계의 연구 시사점

도서관 협력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도서관 협력에 참여한 각종 협의체의 설문조사, 지역별 연찬회, 워크숍, 공청회,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한 도서관 협력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참고해야 할 연구 시사점은 표 3과 같다.

7) [인용 2007. 9. 20]. <<http://nl.go.kr/together/network/network.php>>.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표 1) 도서관 협력의 문제점(선행연구)

연구출처	도서관 협력의 문제점
도서관 상호대차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네트워크에 관하여 (최정소,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지원조직 부재 • 도서관 소장자료의 영세성과 유사성 • 대·소규모 도서관 간 장서의 불균형 • 장서의 분실 및 파기 처리
도서관 협력망 협력사업 표준 모델(국립중앙도서관,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각 지역별 협력망 구성·운영의 실제 성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협력의 기반조건 미비(장서, 인력, 서비스, 예산) - 제도적 기반과 행정상의 인식 부족 - 이용자의 협력을 통한 자료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의지 부족 - 협력업무 기준, 지침 미비
도서관 협력망 활성화 워크숍 회의자료(국립중앙도서관,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종별 협력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앙관이 되어 총괄 운영하는데 협력망 구조상 어려움 -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상 상호협력 곤란 • 내용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망 운영실태 조사 미비 - 도서관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소관부서, 예산 및 인력 문제 등) - 국립중앙도서관이 타 지역 공공도서관 및 타 관종 간 협력사업에 참여 유도 부족 • 중앙관 중심의 협력망으로 단위 도서관 협력 취약 • 종적인 협력 체계로 지역 내 횡적인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혜택 부족 • 도서관 협력의 내용이 기관과 시설을 연계시키기 보다는 표준화, 정보화, 분담수서 등의 내용에 치중함으로써 협력 내용을 고정화시킴
국가통합 도서관 협력 체계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한성택,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장서에 대한 이용자 불만(타관자료 이용을 꺼려함) • 협력 장서개발이 결과적으로 특정도서관의 전체장서 증가를 둔화시킴 • 도서관 예산이 증가하면 스스로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경향으로 상호협력에 부정적임 • 법적, 행정적, 관리적 측면의 차이에서 오는 협력의 장애 요인이 있음
국가표준 상호대차 기준(안) (국립중앙도서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관종별로 유사한 형태의 도서관 상호협력 협의체가 너무 많고, 협력 내용도 큰 차이가 없음 • 소규모 도서관은 자관의 역량부족을 메꾸기 위해 협력체계에 가입하고 있음 • 상호대차의 경우에도 너무 다양해서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학교·공공·대학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이지연,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부족 • 행정체계간 협력의식 부족 • 협력사업 기반 조성 미비 • 재정부족 등

(표 2) 도서관 협력의 문제점(설문조사)

요 인	도서관 협력의 문제점
개별 도서관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 시설, 직원 등 기본여건의 불충분으로 인해 자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 나아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까지 자원을 공유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 개별도서관간 차이가 미미하여 실질적 협력의 필요성 감소 • 도서관 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의 어려움

도서관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도서관 및 사서들의 협력의 중요성 및 가치에 관한 인식부족 • 협력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제도적 합의 부족 • 관종별 또는 지역단위 협력체계 등,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도서관 협력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차, 공동수서, 공동목록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 예산사용(비용분담문제), 장서관리(대출도서 미회수 또는 분실 등)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도서관 협력 체계화 및 운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종별, 지역별, 주제별 다양한 협력체계가 운영되지만 운영수준에 차이가 많고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체계는 극소수에 불과함 • 자발적 협력체계 및 운영 미흡으로 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됨 • 협력체계 운영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표 3) 연구의 시사점

선행연구	설문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중앙 집 중형 협력체계에서 지역 중심의 다중관중 협력으로 발전 필요 • 획적이며 지역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협력체계 지원을 위한 법적·제 도적 장치 필요 • 도서관 서비스의 표준화 또는 통 일성 확보 필요 • 도서관 협력을 위한 개별도서관 의 역량강화(전담인력 확보, 관 련예산 증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도서관의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에 필요한 인력, 장서, 재원 확보 • 도서관 협력에 대한 인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에 관한 메뉴얼 제작과 훈련교재 개발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과 가치, 방법 등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 • 도서관 협력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을 전제로 한 상호대차, 공동수서 방안 강구 - 자료이관, 교환, 폐기, 제적에 관한 법적 기반 정비 - 기타 도서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비 도모 • 도서관 협력체계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도서관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재조직 - 현재 대부분 임의 단체로 되어있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법인화 추진 - 전담인력 배치, 사무실 운영 지원 - 도서관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도서관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3. 도서관 협력체계의 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3.1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모형 개발

3.1.1 도서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도서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기본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김세운 2005, 15-17).

첫째, 지역의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논의는 지역차원에서의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국적 협력망이 나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도서관의 일반적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체감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 나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체계를 지역 내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내 단위 공공도서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 중심적 서비스 강화가 중요하다. 즉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과 방식으로 지역차원의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문고나 학교도서관 등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항상 접하게 되는 기관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식의 도입이나 서비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용자들을 대하는 서비스 종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도서관 자체의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지원체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원하는 중앙 차원의 행정체계에 대한 개편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지원은 형식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형식적 체계와 동시에 내용적 충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도서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도서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별 도서관의 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용자에게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차적 역할과 책임은 개별 도서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해 개별 도서관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도서관협력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관중별

협력망을 근간으로 지역차원에서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차원의 도서관협력은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일상적인 생활권 내에 있는 문고나 학교도서관 등의 도서관과의 협력을 우선하고,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나아가 해외 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지역단위 협력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새롭게 규명하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3) 도서관 협력은 지역단위에서 시작해서 전국단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단위 협력은 지역주민들의 구체적 요구에 근거해서 지역별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나 해결이 필요한 사항들에 한해 중앙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도서관 협력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조직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국회도서관 등 지금까지 중앙단위에서 도서관협력을 기획하고 주도해 온 기관들의 역할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도서관협력은 가능한 한 도서관 스스로의 협력체에 의해 상시적으로 논의되고 필요한 내용의 협력을 강화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의학도서관 분야에서 (사)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도서관 자원 공유는 물론 최근 전문인력 양

성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학전문사서 제도 도입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나 도서관 환경 변화에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자발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여러 도서관 관련 전문단체 등의 활동을 점검하고 이들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5) 도서관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최근의 정보기술과 통신망의 발달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도서관 협력의 대부분 내용에서 발달된 정보기술은 이들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도서관 정보화 관련한 정책과 사업 추진 성과는 물론 새로운 정책과 사업 모색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도서관

협력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6) 특별히 최근 사회와 도서관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웹 2.0⁸⁾과 도서관 2.0⁹⁾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용자의 요구 변화추세를 고려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협력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도서관 협력은 각 도서관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모든 도서관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정보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도서관 2.0의 시대를 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 협력체계는 이 같은 시대적 정신을 반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3.1.2 새로운 도서관 협력체계 구상

도서관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도서

8) 웹 2.0(Web 2.0)은 단순한 웹사이트의 집합체를 웹 1.0으로 보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전한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웹 2.0이라고 지칭한다. 이 용어는 'O'Reilly Media'에서 200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중화 되었다. 이 개념의 주창자들은 궁극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웹 2.0이 데스크톱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웹 2.0의 주창자들은 블로그의 트랙백이나 위키와 같이 각 주체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상호 작용을 통해 콘텐츠를 재생산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주목했다. 최초의 웹 2.0 컨퍼런스에서 Tim O'Reilly와 John Battelle는 웹 2.0의 특징을 다음의 핵심 요소들로 정리했다.

- 플랫폼으로서의 웹
-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
- 참여 시스템(architecture of participation)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 (오픈 소스 개발과 같이) 여러 시공간에 흩어져 있는 독립적인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혁신하는 시스템이나 사이트
- 콘텐츠와 서비스 신디케이션을 통한 가벼운 비즈니스 모델(lightweight business model)
-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과는 다른 "영원한 베타(the perpetual beta)"
- 롱테일의 힘을 극대화 시키는 소프트웨어(하나의 장치에서만 동작한다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념을 뛰어 넘어 여러 기기종(異機種) 장치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구동됨) [출처]는 위키피디아(한국어판) "웹 2.0" [인용 2007. 9. 26.] <http://ko.wikipedia.org/>

9) 웹 2.0 환경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2005년 첫 번째 도서관 2.0 블로그가 개설되었다. 아직 이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나, 웹 2.0을 이용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개발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Casey, M.E. & L.C. Savastinuk(2007). 『Library 2.0: a guide to participatory library service』. New Jersey: Information Today, Inc. 참조.

관법」 환경에서는 도서관 정책의 지방분권의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에 법률로 규정했던 도서관협력망을 삭제한 대신, 좀 더 구체적 사업단위인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각 시·도에 두도록 한 입법정신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지역단위로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 가능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도서관 협력체계를 모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을 언급하면¹⁰⁾

첫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대표도서관을 상정한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상황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역도서관 운용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 단위 도서관 또한 해당 도서관에 국한된 관점에서 운영되기보다는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서비스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그럴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문고나 학교도서관 활동이 공공도서관 활동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역의 중요한 지식정보서비스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차원의 도서관 운용 체계 개편은 필연적으로 단위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능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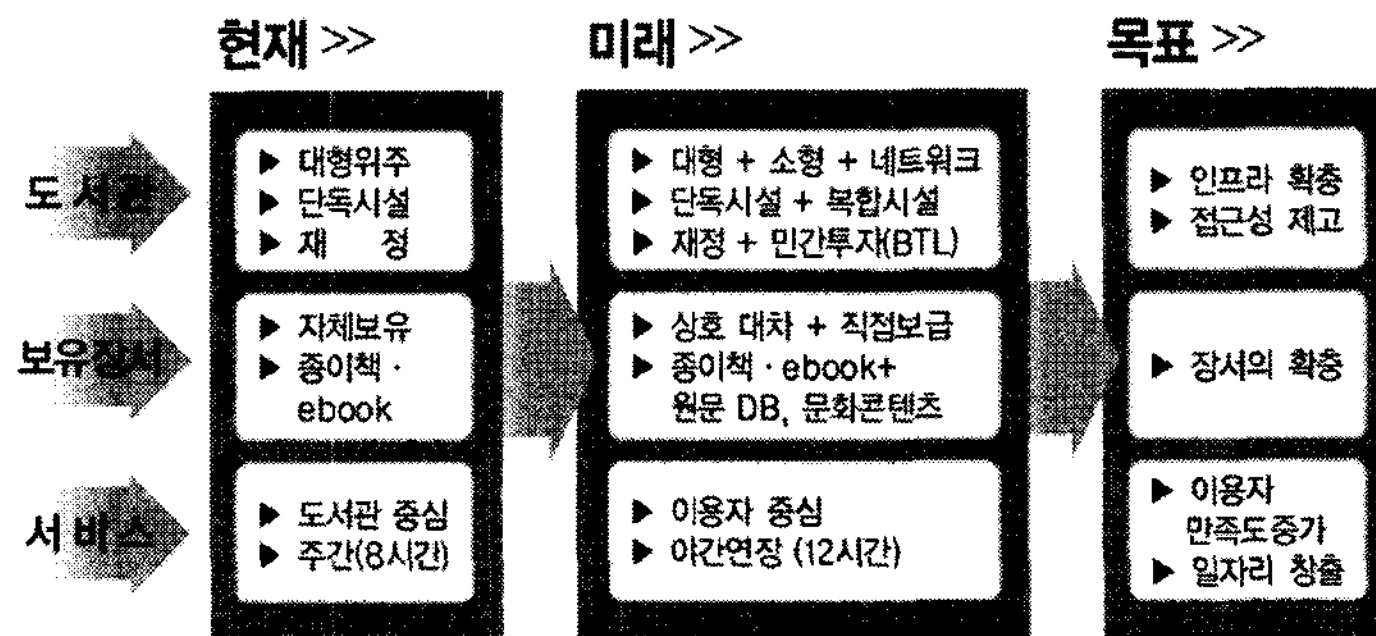
넷째, 새로운 도서관 협력체계를 모색함에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과 도서관 정책체계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과 우선순위 변화는 그림 1와 그림 2 (문화관광부 2006), 정책체계의 변화는 그림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6)과 같다.

다섯째, 지역단위(시·도 차원) 도서관 협력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근간으로 전국적인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도서관 협력체계를 제시해야 한다.¹¹⁾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는 한편으로는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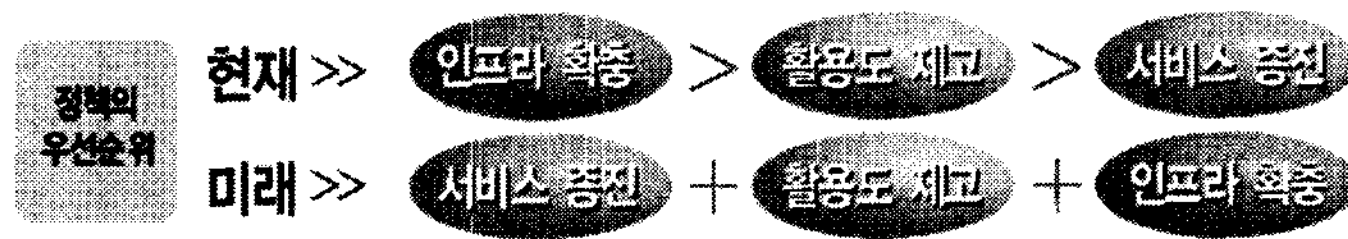
10) 김세훈(2005). 위의 글. 17-21. 다만 당시의 입장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이라고 한 것은 향후 법 개정에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용어가 정리되었기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수정하여 인용한다.

11) 2001년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수행된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연구』(연구수행기관: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그 이후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됨.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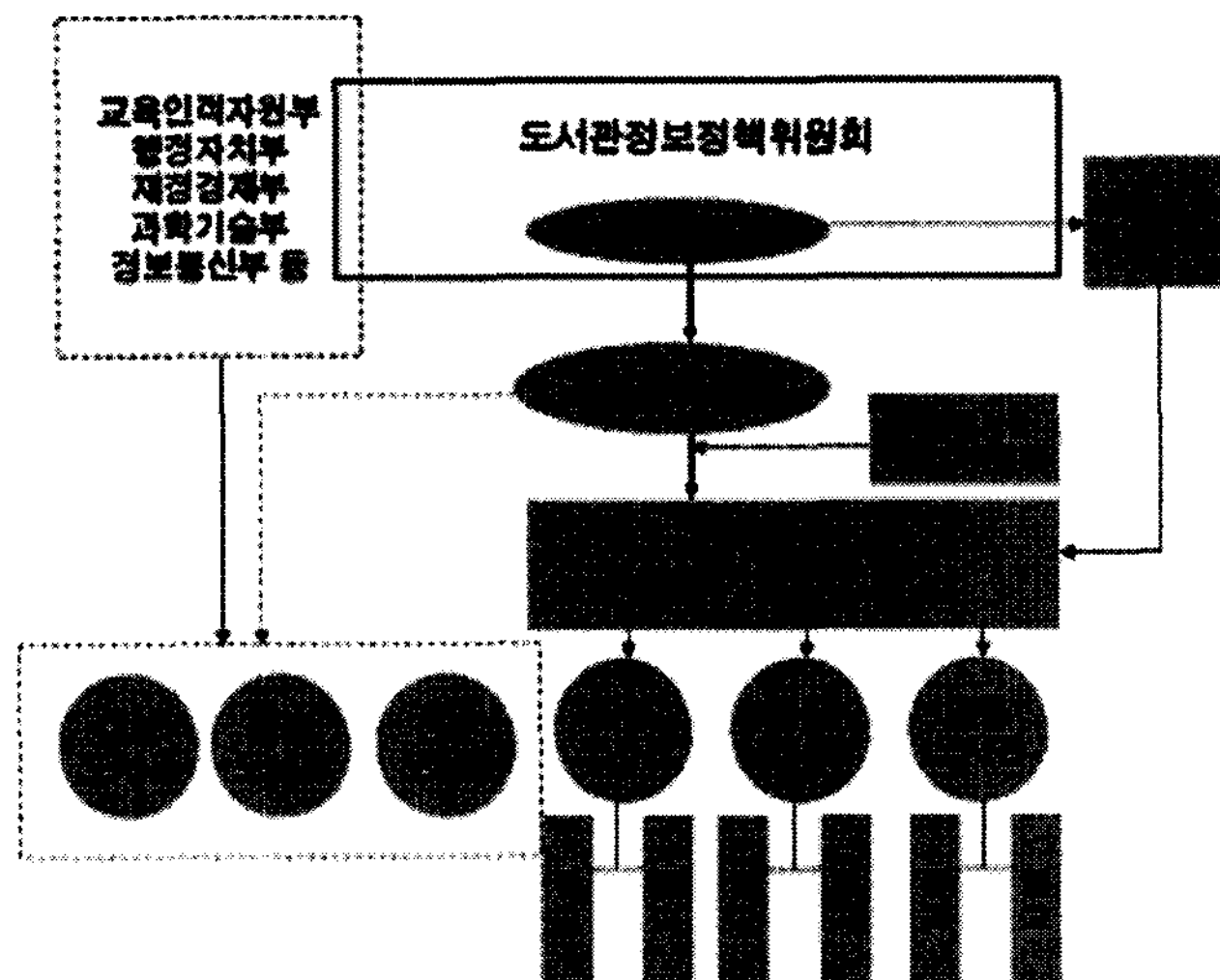
“도서관협력망은 관종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여 현재 수직적이고 행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협력체제를 지역단위의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6개 정도의 광역단위별 도서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중앙정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하여 각 지역별로 도서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지원협력과) 산하에 광역지역단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6개)별로 해당지역 대표관의 협조를 얻어 1개의 도서관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에 국립중앙도서관의 5급 또는 6급 사서직을 파견하여 해당지역의 도서관 협력과 공공도서관 지원, 지도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협력의 강화를 통한 해당지역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협력기구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정보화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 또는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도 지원한다.”(156쪽)



(그림 1) 도서관 정책 패러다임 변화 양상



(그림 2) 도서관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양상



(그림 3) 새로운 도서관 정책 체계

된 자원과 역량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공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도서관들이 상호 전략적 제휴 또

는 공동 마케팅, 공동 브랜딩 등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개별 도서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3.1.3 지역단위 협력체계 기본방향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기본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① 개별 도서관은 자관에서 최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서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지역단위로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이 협력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참여하는 도서관의 개별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몇 개의 지역거점 도서관 또는 관종별로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을 두어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 ③ 지역대표도서관과 참여 도서관들은 공동으로 재정분담 문제를 포함한 협력체계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합의·서명함으로써 협력체계의 운영에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④ 지역단위별로 도서관간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민간의 도서관 전문단체 또는 협의체를 두어 도서관이 자발적으로 도서관협력을 기획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관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협의체는 지역단위로 조직을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각종 지역별로 조직되어 운영 중인 도서관 협의체 또는 협력체계는 지역단위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 ⑤ 각 지역단위로 협력체계 운영을 총괄하는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확보해

야 한다.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에는 실질적인 기획·조정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협력체계 운영을 전담하는 실무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⑥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단위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회도서관 등 국가도서관 또는 협력기구들이 함께 중앙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들 도서관과 기구들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이 협의체는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 활성화와 이들의 연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정책수립이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⑦ 지역별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도서관 전문단체나 협의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단위 도서관 전문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대표도서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의 원활한 통합과 조정, 상호 연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⑧ 도서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은 중앙단위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도서관정보화 사업을 근간으로 2008년 개관 예정인 국립디지털도서관이 다른 국가도서관들과의 협의와 공동사업으로 전국적인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⑨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에는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과 단위 이상의 부서를 두도록 하며, 각 지역거점도서관에는 계 단위 이상의 부서를 두어 협력사업 활성화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도서관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협력사업 담당자를 두어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⑩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실행계획 등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법률에 따라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적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 ⑪ 이전 여러 도서관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역단위 협력체계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및 광역자치단체(시·도) 차원의 지역단위 도서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이한규 2000, 67).

3.1.4 전국적 차원의 도서관 협력 기본 방향
국가 또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도서관 협력은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축될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협력체계가 되

(표 4) 지역단위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조직	역 할
지역대표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도서관 자원 및 서비스 공유 운영/관리 • 도서관 협력 정책/의사 결정 과정 총괄 • 연구, 교육 및 기술 지원 중심 역할 • 지역내 자료보존 도서관 기능
지역 거점 도서관 ※ 지역내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 전문도서관 등 중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도서관 백업/부하 조정 •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중계 시스템의 지역 중심 - 현재의 도서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기능이 확장된 성격을 지원 • 해당 지역 소재의 공공도서관과 최종 개별 도서관의 관리 도서관의 역할 수행
개별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전된 도서관 자동화/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의한 기능 확장 • 소규모 분관/이동도서관 등의 최일선 도서관을 관장하는 성격의 도서관 그룹으로 구성(공공도서관 경우) • 대학이나 학교,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자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최말단 협력 사업 단위로 기능
서비스거점(분관/이동도서관/문고/기타 서비스 포인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및 행정 업무 없이 이용자 서비스 접수/중계/전달/제공에 치중하는 성격의 도서관 그룹 • 인근의 개별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어야 한다. 이 협력체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법원도서관 등 국가도서관은 물론 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이들 기관은 개별 도서관 또는 기관차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지역단위 협력 체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보 서비스 요구에 대한 해결과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각종 기술, 특히 정보화 개발과 보급, 표준화, 전국 단위의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협력사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국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또는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는 지역단위 협력체계의 상위단위 또는 지도·감독의 위치가 아니라 지역단위 협력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 즉, 하향식 협력이 아니라 상향식 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협력망에서 중앙관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되, 영국의 BLDS와 같은 대출전용기관을 두어 전국적인 상호대차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하는 2008년 이후에는 도서관 협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효율적인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국적 도서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별 국가도서관 설립(예: 과학기술도서관, 예술도

서관, 의학도서관 등)을 통해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단위에서의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가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

- ④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도서관과 기관들은 사업 추진시 반드시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협력체계 또는 협력체계에 참여한 개별 도서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유형의 도서관 협력체계는 “전체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전체”¹²⁾를 목표로, 개별도서관과 협력체계가 상호 발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⑤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는 반드시 도서관들의 자발적 협력체인 전문단체의 참여와 역할이 중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관종별, 지역별로 도서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종별 협의체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역별 협의체는 규모나 활동범위, 조직의 위상과 역량이 크게 미흡해서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단위 도서관 협의체를 조직하고 활성화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12) 알렉상드르 뒤마의 『삼총사』에 나오는 구절로, 개별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을 위해 기여해야 하며, 전체 도서관은 개별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구호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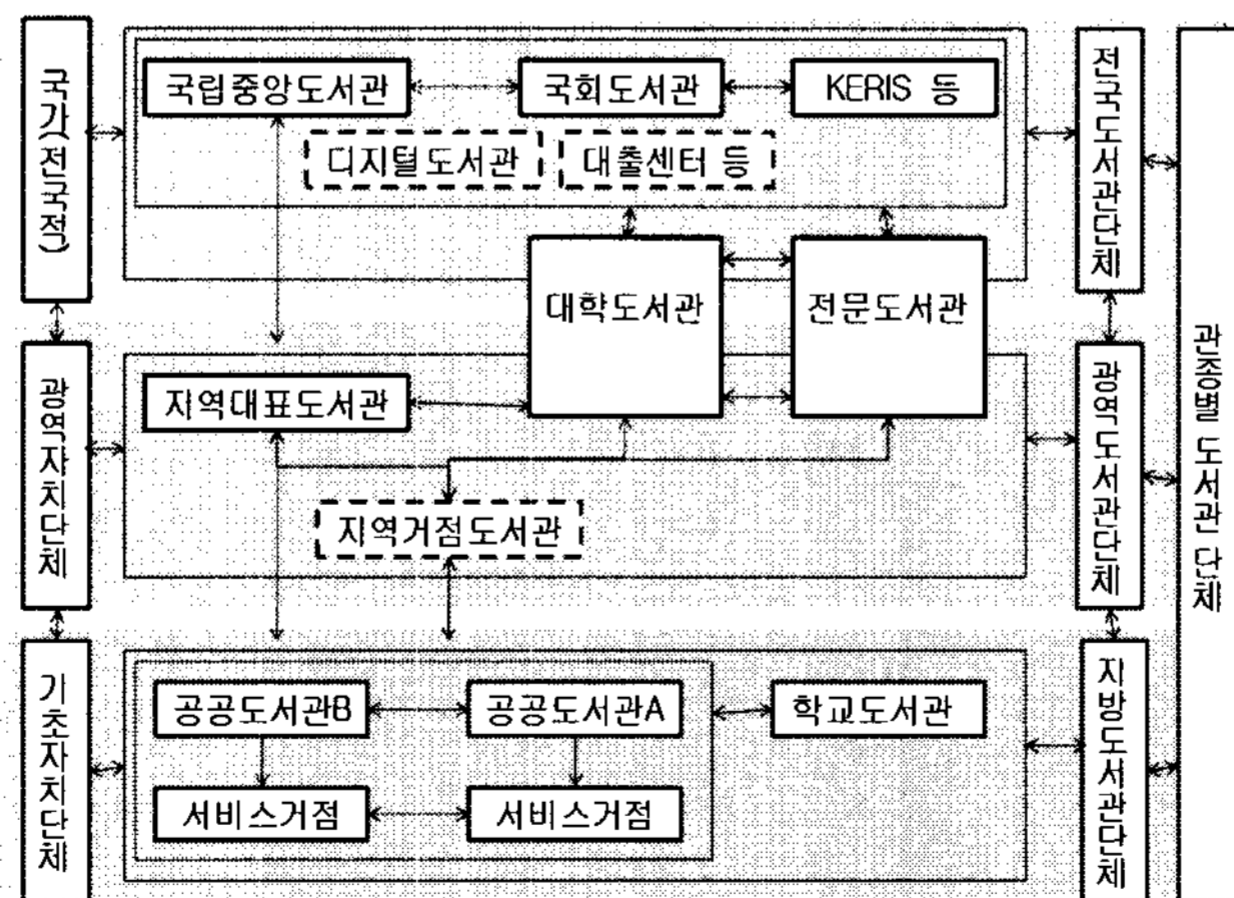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대표적이고 종합적인 전문단체인 (사)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7년 3월 『한국도서관협회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조직된 산하 3개 지구협의회(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이외에도 미설치 광역시·도에 지구협의회를 결성하여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관종별 협의회를 포함해서 ‘한국도서관단체총연합회’(가칭)로의 발전을 통해 ‘도서관 중심의 지식문화 선진국 창출의 구심체’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분야에서도 3개의 주요 협의회¹³⁾가 하나의 협의체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¹⁴⁾로 거듭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문도서관 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별로 협의체를 조직해서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도서관 협력체계에 있어 여러 형태의 모형¹⁵⁾이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적인 협력체계는 지역적, 시대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모델이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전국적 수준의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에서 보듯이 지역단위 협력체계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공도서관과 서비스거점을 중심으로 하되 해당 지역내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을 포괄하는 종합적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또한 각 단계별 행정기관과 지역별·관종별 도서관 단체가 협력체계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 각 단계별 도서관 협력체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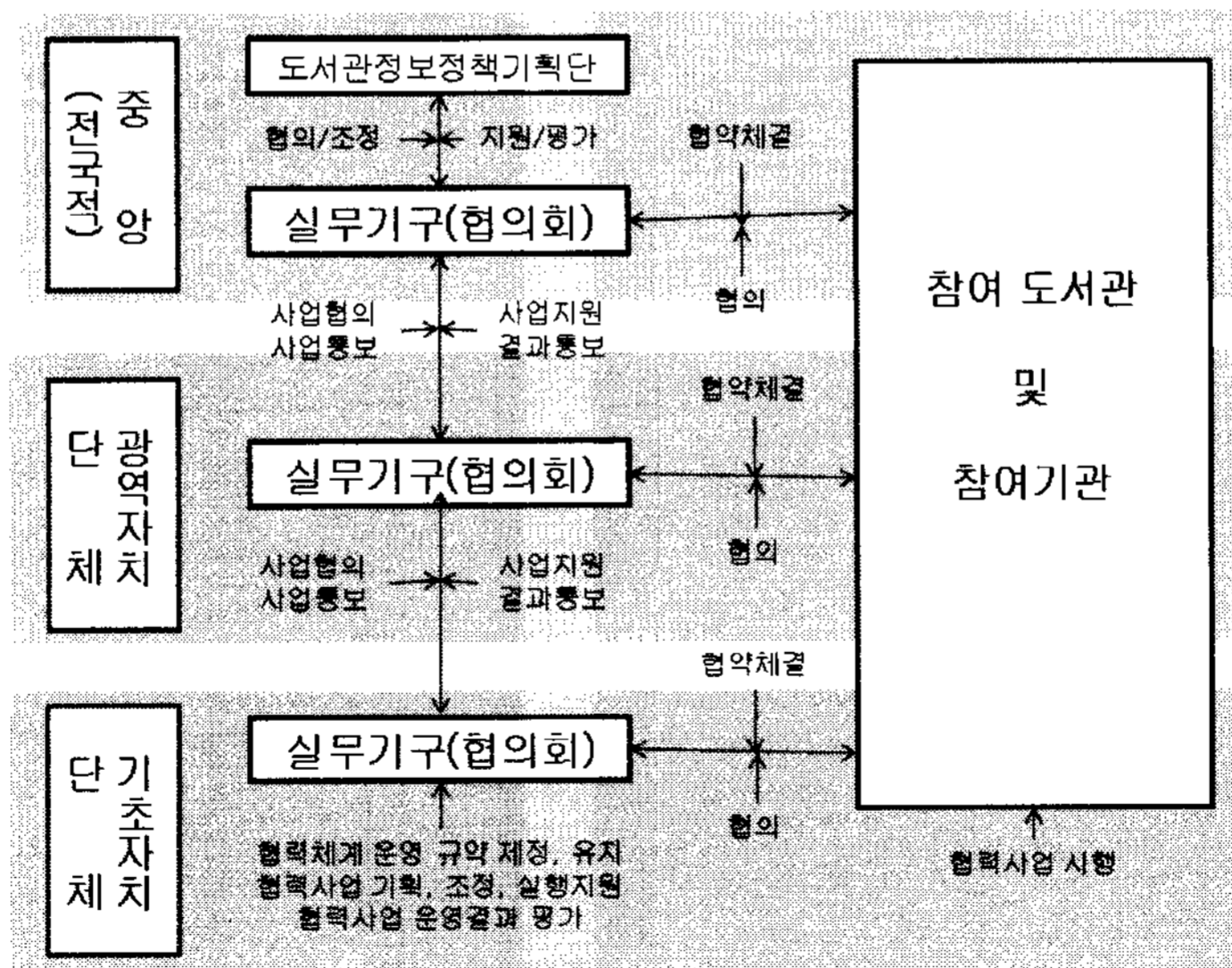
13)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협의회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가 각각 설립·활동 중에 있다.
 14) 2007년 12월 12일 창립총회를 가지고 공식 출범했다.
 15) 국립중앙도서관(2001).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 16-20에는 여러 유형의 협력체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일차적으로 공공도서관간(문고 등을 포함) 또는 학교도서관간 협력과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간 협력을 추진하며¹⁶⁾, 다음 단계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체계에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연결한다. 이 때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협력을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도서관을 설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로는 국가단위에서는 우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국가차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 협의체가 광역단위 도서관 협력체

계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단위 도서관서비스까지도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 도서관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해당 지역단위에 자발적으로 결성, 운영되는 도서관 전문단체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관종별 도서관 단체는 지역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관종의 관점뿐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도서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도서관간 또는 협력체계간에는 반드시 협력체계 표준규약에 합의하고, 제반 기획과 협의, 조정 등을 총괄하는 조정기구(협의체)가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의 운영 모델은 그림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5) 단계별 도서관 협력체계 운영 모델

16) 현재에도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 협력사업은 다수 추진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미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강화를 위한 실증적 사례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한윤옥)를 통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이 두 분야 협력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3.2 도서관 협력체계 관련 제도개선방안

3.2.1 도서관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방안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 또는 도서관 협력체계들의 활동을 유인하고 적극적 참여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법」 개정 검토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 협력 관련 근거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의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회에서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2007.11.22.)에서는 학교도서관 분야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될 학교도서관협력망이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 유통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협력망의 구축·운영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 협력에 관해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나 기존 법률(「도서관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학교도서관 부문과 같이 「도서관법」을 분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법」으로의 개정을 추진하던 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바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에서는 3가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3안은 변화하는 도서관환경에 발맞춰 관련법제가 현실에 맞도록 전문화하고, 다른 법령에 미치는 경우가 가능한 한 적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장기적으로 각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화하기 위해 분법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화를 위한 분법은 동시에 각각의 개별법이 전체적인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형평성과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개별 법률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도서관법간 체계성과 효율적 연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146). 다만 도서관 협력은 도서관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때 굳이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도서관간 자발적 협의에 근거한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같은 방식은 개별도서관이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독자적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적 기반 조성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최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서관 정책으로 도서관 협

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2) 상호대차 등에 관한 법적 기반 정비

도서관 협력을 위한 공동수서나 분담수서, 국내외 DB 공동구입 및 활용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서 관련 예산이나 서비스 관련 예산 사용과 관련한 각종 법률(「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조항을 검토, 필요한 경우 도서관 협력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큰 도서의 망실 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¹⁷⁾한 '도서의 이관·교환 및 폐기·제적에 관한 지침'에서 일정 수준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행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지침에서는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에 이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규정에서는 없었던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31조의 지속적 재검토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술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본부의 저작권 관련 부서(저작권정책팀, 저작권산업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서관 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작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3) 도서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책 마련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¹⁸⁾ 즉, 매년 관계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가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에 도서관 협력사업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도 도서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각 지역별 도서관 협력 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도서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실무조정회의를 활용해 사전에 각 중앙행정부처나 시·도와 효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도서관 협력사업을 주도해 온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국가표준 상호대차

17) 2007년 12월 6일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로 고시되었다.

18) 최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도서관 협력과 관련한 내용은 앞의 표 15를 참조할 것.

시스템이나 협동 디지털참고봉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이를 도서관 현장에 도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대법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국가 수준의 도서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이나 기관들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적 수준의 도서관 협력을 기획하고 조정하여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4) 도서관정보망 개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기타 각종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정보망을 개별도서관 운영 시스템에서 지역단위 또는 전국적 도서관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03년 완료된 도서관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제2차 도서관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이자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역할을 수행할 문고나 어린이도서관 등의 정보화 사업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도서관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도서관 협력체계의 실효성 있는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정보화의 목표는 라이브러리 2.0을 반영해서 개방형, 참여형 도서관정보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지

식창조형 Library 2.0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양방향 지능형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국가 글로벌 스탠다드 도서관정보관리 표준시스템 개발·보급을 제시하고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7, 21).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발하여 확산을 추진 중인 국가 표준 상호대차 서비스 시스템이나 협력형 디지털참고봉사 시스템 등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도서관 협력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5) 도서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도서관 협력 협의회 활성화

도서관 협력체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협력체계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관이 참여하고 있는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다른 협력체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한 경우에 성과도 높고 만족도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⁹⁾

도서관 상호협력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인력의 규모가 큰 경우,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회칙이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종합목록의 갱신빈도가 높고 증보판 발행주기가 짧은 경우, 그리고 이용요금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효율이 높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김창근 1994).

19) 2007년 12월 4일 개최된 워크숍에 참여한 한 참가자도 자발성에 의해 참여한 협력체계의 경우에는 참여의 적극성도 높고 따라서 협력체계에 대한 결합정도도 높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도서관 협력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있어서는 도서관과 사서들의 적극적 이해와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성을 유인해 낼 수단으로서 민간차원의 도서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도서관 협력과 관련된 이론을 분석하고 문헌을 통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 하였으며 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지역연찬회, 그리고 공청회와 워크숍, 최종 자문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된 법·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도서관 협력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하기위한 후속 연구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국적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그리고 민간차원 등 3개 부문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들 3개 부문의 상호 이해 도모와 구체적 실현 방안 강구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체를 두어 제안된 전국적 협력체계 모델 뿐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다른 여타 국가 차원에서 기획·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력사업 등에 대한 정책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

- ② 도서관 전문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 협의체는 한정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관 협의체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체계와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지역대표도서관 설립과 운영이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서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역대표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는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²⁰⁾

지역대표도서관은 그 업무와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관장의 직급 상향 조정 등의 조직체계 강화와 함께, 운영재원의 안정적 지원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 시·도에서는 인력 운용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의 설립, 운영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역할의 하나인 도서관 자료의 보존기능은 지역단위 협력체계에서도 중요한 협력사업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충분한 보존역량을 갖춘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16개 시·도에 지역

20) 현재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북도이며, 대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곳은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2곳뿐이다.

대표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 ④ 도서관 협력과 개별 도서관의 대외 개방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 안에서 개별 도서관의 서비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적지 않은 대학도서관이나 일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방은 해당 도서관의 입장에서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주나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 개방을 위해서는 도서관간 협력체제로 확대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

- ⑤ 도서관 설치와 운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현실에서 지역단

위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소요의 규모와 자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지역적 불균형이며, 특히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서관과 같은 문화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과 행정지원이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단위별 종합적 도서관 서비스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강화를 위한 실증적 사례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한윤옥).

교육학술정보원. 2006. 『2006년 학교도서관정보화기반체제(DLS) 운영·지원』(사업보고 PR 2006-5).

국립중앙도서관. 2001.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

김세훈. 2005. 『도서관 협력망 활성화 워크숍 회의자료』.

김창근. 1994.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7.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문화관광부. 2006.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 2006년 2월23일.

이한규. 2000. 경기도 공공도서관 발전정책: 사이버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 발표회: 사례발표자료』.

집』. 한국도서관협회, 67.
최정소 2007. 도서관간 상호대차(ILL)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네트워크에 관하여.
[인용 2007. 9. 20].
<<http://kowon.dongseo.ac.kr/~stork/way-board/db/Data/file/semina6.ht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인용 2007. 9. 20].
<<http://www.keris.or.kr/intro/station3.jsp?div=5&layerNo=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도서관정책 추진 체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 146.